

배포 2026. 8. 24.(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8. 24.(월) 12:00
(지 면) 2026. 8. 25.(화) 조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전부제한 16개교, 일부제한 4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8월 25일(화) 2027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발표한다.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 기준은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한국대학평가원·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실시)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학자금 지원 여부 결정 기준]

구분	학자금 지원 전부 제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모두 불가능)	학자금 지원 일부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학자금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모두 가능)
기준	미인증 대학	인증 대학 & 경영위기 대학	인증 대학 & 재정건전 대학

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총 20개교

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인 경우는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받는 ‘전부 제한 대학’이다. 해당하는 대학은 16개교(일반대 8개교, 전문대 8개교)이다.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라도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인 경우, 일부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받는 ‘일부 제한 대학’이 된다. 해당하는 대학은 4개교(일반대 2개교, 전문대 2개교)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제도(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인 경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이 계속 제한되며 제한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 (예시1) '26~'27학년도 **2년 연속 전부 제한** 대학인 경우(연속 제한 대학),
26학번 재학생, 27학번 신·편입생 **전부 제한** 적용

(예시2) '26학년도 **전부 제한** 대학, '27학년도 **일부 제한** 대학인 경우(제한 범위 변경),
26학번 재학생, 27학번 신·편입생 **일부 제한** 적용

(예시3) '26학년도 **전부 제한** 대학, '27학년도 **지원 가능** 대학인 경우(제한 해제),
26학번 재학생, 27학번 신·편입생 **모두 학자금 지원 가능**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현황]

구분	전부 제한 16개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모두 불가능)	일부 제한 4개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불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일반	▲ 8개교 -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 2개교 - 상지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문	▲ 8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송호대학교, 여주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2개교 - 국제대학교, 대덕대학교

②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 총 288개교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 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결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288개교*(일반·산업대 173개교, 전문대 115개교)이다.

*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 8개교 포함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1.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2. 2026년 대학 평가 개요(대학 기관평가 인증, 사립대학 재정진단)

담당 부서 (학자금지원)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민호 (044-203-6267)
		담당자	사무관	김지애 (044-203-6268)
담당 부서 (기관평가인증)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태경 (044-203-6830)
		담당자	서기관	김수진 (044-203-6911)
담당 부서 (재정진단)	대학지원관 사립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안상훈 (044-203-6950)
		담당자	사무관	김재환 (044-203-6245)



①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 (전부제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일반·산업·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취업 후·일반 상환) 지원이 모두 제한되는 대학

연번	구분	학교명	연번	구분	학교명
1	일반대	금강대학교	9	전문대	(광양보건대학교)
2	일반대	대구예술대학교	10	전문대	나주대학교
3	일반대	신경주대학교	11	전문대	부산예술대학교
4	일반대	예원예술대학교	12	전문대	서영대학교
5	일반대	제주국제대학교	13	전문대	송호대학교
6	일반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4	전문대	여주대학교
7	일반대	한일장신대학교	15	전문대	영남외국어대학
8	일반대	화성의과학대학교	16	전문대	웅지세무대학교

※ 27학년도에 2개교(서영대학교, 여주대학교) 신규 제한, 그 외 14개교 26학년도에도 전부 제한 대학

※ 광양보건대학교는 2026.8.31. 폐교 예정

- (일부제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일반·산업·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중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지원되는 대학

연번	구분	학교명	연번	구분	학교명
1	일반대	상지대학교	3	전문대	국제대학교
2	일반대	추계예술대학교	4	전문대	대덕대학교

※ 4개교 모두 27학년도 신규 일부 제한 대학

②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일반·산업·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3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구분	학 교 명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15개교)	강원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는 2027.3.1. 조선대학교와 통합 예정

【대학 기관평가 인증】

- (목적)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 (평가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인증주기) 4주기는 ' 26~' 30년으로 한 주기 내 동일 기준 적용
- (판정유형) 판정 기준에 따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

유형	일반·산업대 판정 기준	인증기간 및 조치사항
인증	▶ 4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P)	▶ 인증기간 5년 ▶ 3년 차 모니터링 실시
조건부인증	▶ 3개 평가영역 충족(P) 및 1개 평가영역 조건부충족(CP)	▶ 인증기간 2년 ▶ 2년 차 보완평가 실시
불인증	▶ 인증, 조건부인증의 어떤 판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함	▶ 재신청 후 평가 실시

유형	전문대 판정 기준	인증기간 및 조치사항
인증	▶ 평가영역 5개 모두 충족(P)	▶ 인증기간 5년 ▶ 3년 차 사후점검 실시
조건부인증	▶ 평가영역 4개 충족(P) 및 1개 조건부충족(CP)	▶ 인증기간 1년 ▶ 1년 차 보완심사 실시
인증유예	▶ 평가영역 4개 충족(P) 및 1개 미충족(F) ▶ 평가영역 3개 충족(P) 및 2개 조건부충족(CP)	▶ 1년 이내 보완심사 실시
불인증	▶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의 어떠한 판정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신청 후 평가 실시

【사립대학 재정진단】

- (사업개요) 사립대학의 결산서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운영손실, 예상운영손실 보전 유무 등 정량지표(8개)로 사립대학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
- (정량 및 결과지표 활용) 대학 운영 및 성과 등 정성지표를 배제하고, 결산서와 공시자료(학생충원율) 등의 최종 정량 값을 활용하여 재정진단 실시
- (재정여력 확인) 학생 미충원 수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예상운영손익의 합리적 추정으로 대학의 단기·미래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
- (절대평가 및 Decision tree 진단) 지표별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 하는 절대평가로, 예측 진단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목표와 상황 간 연계성을 나타내는 의사결정 나무모형 사용

※ 단순·명료한 절대지표 활용하여 평가를 위한 대학 행정력 소모 최소화 및 경쟁 과열 방지

[사립대학 재정진단 체계도]

